

의안번호	2204702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4. 11. 1.
추 계 번호	24B4356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임업 직렬 공무원의 보수지급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3억 300만원, 2030년 24억 2,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8억 5,900만원(연평균 23억 7,2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67억 7,200만원 (연평균 13억 5,400만원)
- (지방비) 5년간 50억 8,600만원 (연평균 10억 1,7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산림보호직원 의 직무) - 재직기간별 보수지급	현행(A)	17,862	19,072	20,269	22,011	23,955	103,168	20,634
	국비	11,717	12,542	13,179	13,607	14,473	65,517	13,103
	지방비	6,144	6,531	7,090	8,404	9,482	37,651	7,530
	개정안(B)	20,165	21,387	22,688	24,403	26,384	115,027	23,005
	국비	12,951	13,838	14,548	14,982	15,970	72,289	14,458
	지방비	7,214	7,549	8,140	9,421	10,414	42,738	8,548
추가재정소요(C=B-A)		2,303	2,315	2,419	2,392	2,429	11,859	2,372
	국비	1,234	1,296	1,369	1,375	1,497	6,772	1,354
	지방비	1,070	1,018	1,050	1,017	932	5,086	1,017

주: 1. 청원산림보호직원 수(총 461명)는 변동하지 않으며, 추계기간 동안 각 연도에 정년(60세)이 도래한 자는 연말에 퇴직하고, 이듬해에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2. 각 연도별로 재직기간에 따라 직급 상향조정 반영

3. 재직기간별 직급 상향이 이루어지는 6급(임업주사) 및 7급(임업주사보)의 보수 및 기관 부담금을 산출한 것임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제2항 신설(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 지역에서 <u>임업직렬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u>(제1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u>산림보호직원의 보수</u>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u>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함</u>(제2항) 1. 재직기간 7년 미만: 임업서기보 2. 재직기간 7년 이상 14년 미만: 임업서기 3. 재직기간 14년 이상 24년 미만: 임업주사보 4. 재직기간 24년 이상: 임업주사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4조제2항 신설(산림보호직원의 직무)	○	•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기간 동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재직기간별 보수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임업주사(6급) 및 임업주사보(7급) 보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보수 및 기관부담금) - (현행 보수 및 기관부담금(기준선))

- 현행법령은 산림보호직원은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하며 보수(봉급 및 수당 등)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임업서기’(8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임업주사보(7급, 재직기간 14년 이상 24년 미만) 또는 임업주사(6급, 재직기간 24년 이상)의 보수를 적용받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개정안에 따라 재직기간이 각각 7년 이상 14년 미만, 7년 미만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지급 수준이 임업서기(8급) 또는 임업서기보(9급) 수준으로 변경되어 재정지출 감소¹⁾가 발생하게 되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²⁾
- 추계기간 동안 청원산림보호직원 총 인원(461명, '24년 10월 기준)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 연도별 정년(60세)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연도 말에 퇴직하고, 이듬해에 동일한 수의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신규채용되며, 임업서기보(7년미만)의 보수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 현행법은 정년할 때 나이가 60세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별 퇴직 시기를 특정하기 곤란함
- 총 정원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자산취득비,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등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³⁾

- (기관부담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1) 연평균 보수액(지방산림청, '24년 기준)은 청원산림보호직원 58백만원, 임업서기(8급) 45백만원, 임업서기보(9급) 38백만원으로, 현행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연평균 보수액이 임업서기(8급) 및 임업서기보(9급)의 연평균 보수액을 상회함
- 2)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안의 직급변경에 따라 보수액이 현행 수준보다 적어지는 경우, 경과조치 등을 두어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2024년 10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5	1.9	1.9	1.9	1.9	1.9	1.9
기관부담금 요율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5.624	15.734	15.830	15.925	16.019	16.114	16.204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청원산림보호직원 개요

-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함)은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치하는 사람을 말함⁴⁾
 - 2024년 10월 현재, 산림보호직원은 총 461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 신분으로 임업공무원의 업무 수행중
 - － 국가기관 소속 287명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
 - － 지방자치단체 소속 174명 (강원도, 충청북도 등)
 - ※ [참고자료] 소속기관별 청원산림보호직원 현황 참고
 - 산림보호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나 임용, 신분보장, 퇴직, 급여 등은 국가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원하여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의 대상이 됨⁵⁾

4)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5) 법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①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자격, 보수, 교육, 복무,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분보장) 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7조(당연 퇴직 등) ①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

- 산림보호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은 임업서기(8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나. 산림보호직원의 직무(안 제4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신설)

- 개정안은 산림보호직원에 대해 재직기간별로 임업직렬 공무원 보수를 구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보수액 등이 상향조정되는 산림보호직원(임업주사, 임업주사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표 2] 개정안에 따른 산림보호직원 보수 지급기준 비교

	현행	개정안
산림보호직원 보수 지급기준	임업서기	• 재직기간 7년 미만: 임업서기보 • 재직기간 7년 이상 14년 미만: 임업서기 • 재직기간 14년 이상 24년 미만: 임업주사보 • 재직기간 24년 이상: 임업주사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재직기간별 보수지급 수준 변경에 따른 산림보호직원 수

- 청원산림보호직원 수(총 461명)는 변동하지 않으며, 추계기간 동안 각 연도에 정년(60세)이 도래한 자는 연말에 퇴직하고, 이듬해에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각 연도별로 재직기간에 따라 직급 상향조정 반영
 - 이때, 재직기간이 각각 7년 이상 14년 미만, 7년 미만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지급 수준이 임업서기(8급) 또는 임업서기보(9급) 수준으로 변경되어 재정지출 감소가 발생하게 되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3.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②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중지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과원(過員)이 된 경우

법 시행령 제6조(보수 등의 지급) ①산림보호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임업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산림보호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원하여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표 3] 재직기간별 청원산림보호직원 수 산출: 2025~2030년

(각 연도말 기준, 단위: 명)

	소속	재직기간 (x 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	국가기관	—	287	287	287	287	287	287
	지자체	—	174	174	174	174	174	174
	합계		461	461	461	461	461	461
개정안	국가기관 (A)	6급 ($x \geq 24$)	2	16	30	46	59	79
		7급 ($14 \leq x < 24$)	153	148	139	125	111	95
		8급 ($7 \leq x < 14$)	66	59	53	59	54	57
		9급 ($7 < x$)	66	64	65	57	63	56
		소계	287	287	287	287	287	287
	지자체 (B)	6급 ($x \geq 24$)	27	34	36	43	46	49
		7급 ($14 \leq x < 24$)	55	52	52	49	59	65
		8급 ($7 \leq x < 14$)	50	49	53	62	56	54
		9급 ($7 < x$)	42	39	33	20	13	6
		소계	174	174	174	174	174	174
	합계 (C=A+B)	6급 ($x \geq 24$)	29	50	66	89	105	128
		7급 ($14 \leq x < 24$)	208	200	191	174	170	160
		8급 ($7 \leq x < 14$)	116	108	106	121	110	111
		9급 ($7 < x$)	108	103	98	77	76	62
		소계	461	461	461	461	461	461

주: 1. 청원산림보호직원 수(총 461명)는 변동하지 않으며, 추계기간 동안 각 연도에 정년(60세)이 도래한 자는 연말에 퇴직하고, 이듬해에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2. 각 연도별로 재직기간에 따라 직급 상향조정 반영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직급별 연평균 보수 및 기관부담금

- 지방산림청 소속 산림보호직원 및 일반직(6~7급) 공무원의 1인당 연평균 보수(2024년 예산 기준)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 연평균 보수 및 기관부담금 산출
 - 이때 1인당 연평균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은 1인당 연평균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관부담금 요율 적용

[표 4] 지방산림청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연평균 보수
(2024년 기준, 단위: 원)

	청원산림보호직원	6급	7급
1인당 연평균 보수	58,388,503	78,042,128	64,319,607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표 5] 지방산림청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연평균 보수 산출:
2024~2030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 청원산림보호직원	58	59	62	64	66	69	72
임업주사(6급)	78	80	81	83	84	86	87
임업주사보(7급)	64	66	67	68	69	71	72

주: 지방산림청 2024년도 예산 기준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를 바탕으로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6급 및 7급 적용 대상자의 연도별 보수 및 기관부담금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6]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보수 및 기관부담금 추계: 2025~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소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현행 (A)	보수	국가기관	9,206	10,116	10,819	11,359	11,718	12,455
		지자체	4,870	5,305	5,633	6,111	7,238	8,160
	기관 부담금	국가기관	1,449	1,601	1,723	1,820	1,888	2,018
		지자체	766	840	897	979	1,166	1,322
	합계		16,291	17,862	19,072	20,269	22,011	23,955
		국비	10,655	11,717	12,542	13,179	13,607	14,473
		지방비	5,637	6,144	6,531	7,090	8,404	9,482

구분		소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개정안 (B)	보수	국가기관	6급	159	1,297	2,477	3,871	5,059	6,902
			7급	10,028	9,884	9,460	8,669	7,844	6,841
		지자체	6급	2,147	2,755	2,973	3,618	3,944	4,281
			7급	3,605	3,473	3,539	3,398	4,169	4,681
	기관 부담금	국가기관	6급	25	205	395	620	815	1,118
			7급	1,578	1,565	1,506	1,389	1,264	1,108
		지자체	6급	338	436	473	580	636	694
			7급	567	550	564	544	672	758
	합계			18,447	20,165	21,387	22,688	24,403	26,384
		국비		11,790	12,951	13,838	14,548	14,982	15,970
		지방비		6,657	7,214	7,549	8,140	9,421	10,414

주: 재직기간별 직급 상향이 이루어지는 6급(임업주사) 및 7급(임업주사보)의 보수 및 기관 부담금을 산출한 것임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지급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8억 5,9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67억 7,200만원
- (지방비) 5년간 50억 8,600만원

[표 7] 재직기간별 청원산림보호직원 보수 지급기준 구분 적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현행(A)	17,862	19,072	20,269	22,011	23,955	103,168
국비	11,717	12,542	13,179	13,607	14,473	65,517
지방비	6,144	6,531	7,090	8,404	9,482	37,651
개정안(B)	20,165	21,387	22,688	24,403	26,384	115,027
국비	12,951	13,838	14,548	14,982	15,970	72,289
지방비	7,214	7,549	8,140	9,421	10,414	42,738
추가재정소요 (C=B-A)	2,303	2,315	2,419	2,392	2,429	11,859
국비	1,234	1,296	1,369	1,375	1,497	6,772
지방비	1,070	1,018	1,050	1,017	932	5,086

- 주: 1. 청원산림보호직원 수(총 461명)는 변동하지 않으며, 추계기간 동안 각 연도에 정년(60세)이 도래한 자는 연말에 퇴직하고, 이듬해에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2. 각 연도별로 재직기간에 따라 직급 상향조정 반영
3. 재직기간별 직급 상향이 이루어지는 6급(임업주사) 및 7급(임업주사보)의 보수 및 기관 부담금을 산출한 것임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 산림보호직원 수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서, 향후 인원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소속기관별 청원산림보호직원 현황

(산림청 제출자료)

□ 소속기관별 청원산림보호직원 현황

(2024년 10월 기준, 단위: 명)

구분	배치기관		배치인원
산림청	지방청	북부지방청	43
		동부지방청	40
		남부지방청	33
		중부지방청	22
		서부지방청	23
	국립산림과학원		16
	국립수목원		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9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12
	국가기관 합계		287
지방자치단체	인천시		2
	경기도		9
	강원도		60
	충청북도		39
	충청남도		27
	전라북도		29
	전라남도		7
	경상북도		1
	지방자치단체 합계		174
총 계		461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상남도, 제주도는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없음
 자료: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제출자료